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9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542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재단법인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9. 7. 18. 선고 2018구합82236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0. 24.
판 결 선 고	2019. 11. 14.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2. 피고가 2015. 12. 10. 원고에게 한 별지 [표]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9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4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『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정한 유예기간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,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.』

나.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다. 판단

1) 관련 법리

가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"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"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"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9

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"를 들고 있다.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위 법에서 사용하는 '직접 사용'이란 용어의 뜻은 "부동산 …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…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)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. 1. 1.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(시행일 2014. 1. 1.), 이는 '직접 사용'의 주체를 소유자로 한정하는 취지이다. 아울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즉, 위탁사용에 관하여는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(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본문, 제50조 제2항 본문 등 참조).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,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 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다)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<법률 제12175호, 2014. 1. 1.> 제3조는 "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라)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정한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비영리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. 다만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이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9

2) 이 사건에 관한 판단

가)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2014. 1. 1.자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후인 2014. 11. 6.이므로, 이에 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위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된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, 제3자로 하여금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.

나)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아닌 F단체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였다. F단체는 ① 독자적인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, ② 임원회의에서 사업계획, 예산·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(정관 제18조), ③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사항 등을 의결하며(정관 제23조), ④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하고(정관 제37조), ⑤ 회계 역시 독립회계로 운영되며(정관 제29조 제2항), ⑥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원고와 별도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으므로, 원고와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다) 나아가 면제된 지방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. 이 사건 처분 당시 F단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이 사건 처분일인 2015. 12. 10.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4. 11. 6.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. 한편 원고와 F단체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.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추징사유는 앞서 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9

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유예기간 경과 전인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라)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지방세 추징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문주형

판사 이수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9

별지

[표]

(단위: 원)

세목	본세	신고불성실 가산세	납부불성실 가산세	합계
취득세	16,372,510	3,274,500	1,665,080	21,312,090
농어촌 특별세	1,169,460		118,930	1,288,390
지방교육세	935,570		95,140	1,030,710
합계	18,477,540	3,274.500	1,879,150	23,631,190

끝.